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72호
2. 발 의 자 : 정지웅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2월 3일
4.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II.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동물보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학교 내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예방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자함(안 제2조제2호, 안 제6조제1항).

2.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1항).
3. 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5. 2. 11. ~ 2. 15.)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정지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72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는 등 조문 전반을 정비하며, 학교의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사회 전반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복지 등에¹⁾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²⁾ 전국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 가구의 15%인 총 312만 8,962가구였습니다.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1) 동물권이나 동물복지 등은 동물을 하나의 주체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개념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원천과 보호 방식, 보호 대상 등에 있어 다양한 정의와 논란이 존재한다. 가축전염병이나 축산 교역 분야 등의 국제 표준 등을 담당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는 「육상동물보건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서 동물복지를 “동물의 생존 또는 사망 상태와 관계된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정의하고, 동물이 좋은 복지를 경험한다는 것은 “고통이나 두려움 등이 없이 건강과 편안함, 안전함 등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는 때”라고 정의한다. (자료 : WOAH의 육상 동물보건규약(2024년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조, 동물복지의 정의 등은 해당 규약 Chapter 7.1. 참조.)

- <https://www.woah.org/en/what-we-do/standards/codes-and-manuals/terrestrial-code-online-access/> (검색일 2025.2.17.)

2) 통계청(2020), 거처의종류별/반려동물보유유형별가구- 시도,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H2011&conn_path=l2 (검색일 2025.2.17.)

인식조사」 결과에서³⁾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2년 25.4%로⁴⁾ 나타나 그동안 반려동물의 양육이 상당 부분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동물권 학위과정이 개설⁵⁾되었고, 개고기 섭취 등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⁶⁾되는 등 동물권·동물복지에 관한 인식도 상술된 배경에 기초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흐름에서 국회는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⁷⁾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이 실습의 목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 학교 등에서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 2020년 3월 이후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나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거치고 대체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동물 해부 실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국회는 2022년 4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의 증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전반에 관한 인식변화 등에 입법적으로 대응하고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⁸⁾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 해당 법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의된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으로,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2.2.),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lGYmJzjTlGaG9tZSUyRic5MiUyRiU2NT14Mi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검색일 2025.2.17.)

4) 인구주택총조사(인구총조사)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하 국민인식조사)’ 등의 숫자 차이는 조사 방식과 질문 내용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총조사는 전체 인구의 20%를 표본조사한 것이고, 국민인식조사는 5천명을 지역과 성별, 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것에서 기초하는 등 조사 대상과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5) 뉴스1(2024.12.16.), “성공회대학교 '동물권' 관련 석사과정 개설한다…국내 최초”,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33568> (검색일 2025-02-17)

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제정], 일부 규정은 [시행 2027. 2. 7.]

7) 「동물보호법」 제24조의2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3.21. 시행)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115073, (2022. 4. 4. 제안), [원안 가결]

동시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명령제도 도입, 맹견수입신고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조문 구성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한편, 동 개정안은 조례에 따라 수립·시행해야 하는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 수립에 있어 행정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 학대 예방 교육 관련 시책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 사무위탁에 대한 검토(안 제2조제2호, 안 제6조제1항)

-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6조제1항은 각각 동물 학대의 정의와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동물보호법」 인용 조문의 오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세부적으로 안 제2조제2호는 현행 조례가 인용하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가 ‘제2조제9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은 현행 조례가 인용하는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가 각각 ‘법 제4조제3항’과 ‘법 시행령 제6조’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처럼 해당 개정사항은 관계 법령인 「동물보호법」에 합치되도록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법령 간의 불합치에 따른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법령 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표-1]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화

구분	구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0.2.11. 일부개정, 2021.2.12. 시행)	동물보호법 (법률 제19880호, 2024.1.2. 일부개정, 2025.1.3. 시행)
동물학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 관련 단체의 범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위법령 (대통령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생략)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생략)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도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

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동물학대 예방교육 지원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우선, 지원계획은 2024년을 제외하고 최근 4년간(2022~202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제7항과⁹⁾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¹⁰⁾ 따라 매년 수립되는 ‘서울 인성교육 시행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시행되어 왔습니다.¹¹⁾
- 이는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 중 하나인 ‘인간다운 성품’이나 ‘사람됨’이라는 가치는 생명 존중 교육과 그 의미를 같이 하며, 동물학대 예방 역시 폭넓은 의미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한다는 의미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표-2] ‘2025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중 동물학대 예방 교육 관련 내용¹²⁾

V. 서울인성교육 추진 과제

1. 스스로 존엄한 학생

가.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내실화

■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인성교육

- 존엄을 키우는 학교 인성교육

· 동물사랑 생명존중 교육 실시(단위학교 인성교육 운영계획에 포함 권장)

9)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1)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241번 회신 자료 참조(2025.2.14., 초등교육과 제출)

12)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2025), 「2025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15쪽.

-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해당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유사한 인성교육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 시책 추진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 한편, 안 제4조제2항은 각호에서 규정된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안 제4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현행 조례와 비교했을 때 각각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의 추진목표’를 ‘동물학대 예방 교육의 추진목표’로,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을 ‘동물학대 예방 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개정사항은 조문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 동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간의¹³⁾ 구분을 명확히 하여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학생의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 관한 검토(안 제7조 신설)

- 안 제7조는 「동물보호법」 제50조에 따라 학교 등이 동물 또는 동물 사체로 해부 실습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에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는 학교 등이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 실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위원회 심의는 대체 수업 제공 여부, 동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 시행규칙 [별표 8]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림-1]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시행을 위한 절차¹⁴⁾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운영 매뉴얼, 도움 자료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해부실습 금지와 그 예외 적용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심의 없이 동물 해부 실습이 시행된 사실이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¹⁵⁾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5년 1월 현재 학교의 동물해부실습 실시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⁶⁾
- 따라서 안 제7조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을 재기재하여 입법적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학교 관계자 등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제도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4) 서울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2024.2.), 「2024 과학실 안전관리 및 안전매뉴얼」, 7쪽.

15)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2.11.7.) 참조.

16)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241번 회신 자료 참조(2025.2.14., 초등교육과 제출)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2.13.).¹⁷⁾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17)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2.13.)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50조 단서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1)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2)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8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